성주군 출산·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 의 자 : 이화숙 의원외 3인 발의

2. 개정이유

○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양육지원금 증액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지원 강화로 양육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기반조성을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셋째아와 넷째아이상 출산양육지원금 증액지원
(안 제5조 제3항 제3호, 제4호)
- 세째아 월 50만원 1년간 지원
- 넷째아이상 월 70만원 1년간 지원

○ 성주아기보험금 증액 지원(안 제5조 제4항)
- 매월 1인당 3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성주아기보험금 지급 절차 변경(안 제6조 제3항)
- 대상자 보험계약 확정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.

○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 변경(안 제6조제10항)
- 신청서를 검토 후 “14일 이내”를 “매월 14일 이내”로 변경한다.

3 . 관련법령

○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4조 , 제8조, 제10조 및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8조

4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난 2010년 4월 5일부터 제정 시행한 성주군 출산·양육 등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,
-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양육지원금과 성주아기보험금을 증액하며, 보험금 지급절차를 변경함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,
-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앞으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산에 따른 양육지원 외에 의료, 교육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